2026. 10.

독일 연방대법원, 장르 전환을 통한 음악샘플링은 적법한 패스티시(Pastiche)에 해당(Metall auf Metall VI 판결)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6년 9월 3일 선고한 “Metall auf Metall VI” 판결에서 타인의 음반에서 추출한 약 2초 분량의 리듬 시퀀스를 새로운 음악에 반복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독일 저작권법 제51a조의 패스티시(Pastiche)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1)]

이 사건은 독일 전자음악 그룹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의 곡 Metall auf Metall에서 추출한 리듬 시퀀스를 가수 자브리나 제틀루어(Sabrina Setlur)의 곡 “Nur mir”에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1999년부터 계속된 분쟁이다. 20년이 넘는 동안 독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연방대법원, 연방헌법재판소 및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차례로 판단하면서 음악 샘플링에 관한 독일 및 EU 저작권법의 주요 법리가 형성되었다.

초기 소송의 핵심은 짧은 음향의 복제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동일한 음향을 스스로 재현할 수 있다면 자유이용이 배제되는지에 있었다. 이후에는 예술의 자유와 음반제작자의 재산권 사이의 형량,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따른 권리제한사유의 폐쇄성, 인식 가능한 샘플링의 복제권 침해 여부로 쟁점이 확대되었다. 2021년 독일 저작권법 제51a조에 패스티시 제한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는 샘플링이 패스티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 EuGH)는 2026년 4월 14일 판결에서 패스티시의 의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BGH 판결의 핵심은 이 기준을 독일 저작권법 제51a조에 적용하여 Nur mir의 샘플링을 실제로 허용되는 패스티시로 인정했다는 데 있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청구

원고들은 음악 그룹 크라프트베르크의 구성원으로서 1977년 Metall auf Metall이 수록된 음반을 발매하였다. 피고들은 1997년 발매된 Nur mir의 작곡가와 음반제작자이다.

1) BGH, Urteil vom 2026. 9. 3, I ZR 74/22, Metall auf Metall VI.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원고들은 피고들이 Metall auf Metall에서 약 2초 분량의 리듬 시퀀스를 전자적으로 복제하여 Nur mir에 반복적으로 삽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된 시퀀스는 여러 타악기의 소리, 특히 금속성 타격음이 결합된 리듬으로서 Metall auf Metall의 특징적인 요소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이용이 자신들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과 원고 중 한 명이 보유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Nur mir가 수록된 음반의 제작과 배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인, 정보제공 및 음반의 폐기를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법상 모방보호에 기초한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다.

2) 소송의 경과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EU 저작권법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뿐 아니라 독일 저작권법 자체도 변경되었다. 특히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이행기한인 2002년 12월 22일과 패스티시 제한규정을 이행한 독일 저작권법 제51a조가 시행된 2021년 6월 7일이 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Metall auf Metall 사건의 소송 경과와 핵심 쟁점은 아래 표와 같다.

시기·법원·판례번호	핵심 쟁점	판단 및 절차적 결과
2004. 10. 8. LG Hamburg, 308 O 90/99	약 2초의 리듬 시퀀스를 복제하여 반복 사용한 것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짧은 부분이라도 타인의 음반에서 직접 복제하여 이용하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006. 6. 7. OLG Hamburg, 5 U 48/05	차용된 부분의 중요성과 재현 가능성이 침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의 시퀀스는 원 음원의 특징적인 핵심 부분이고 Nur mir에서 계속 반복되므로 권리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재현 가능성은 침해 성립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2008. 11. 20. BGH, I ZR 112/06, Metall auf Metall I	극히 짧은 음향의 복제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구 저작권법 제24조의 자유이용이 적용되는지	가장 짧은 음향의 복제도 원칙적으로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다만 구 제24조는 유추 적용될 수 있지만, 동일한 음향을 스스로 재현할 수 있거나 차용 부분이 선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011. 8. 17. OLG Hamburg, 5 U 48/05	1997년 당시 평균적인 음악제작자가 해당 음향을 동등하게 재현할 수 있었는가	Nur mir는 독립된 저작물이지만 평균적인 음악제작자가 동등한 음향을 재현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차용 부분은 선율이 아니지만 재현 가능성 때문에 자유이용을 부정하였다.
2012. 12. 13. BGH, I ZR 182/11, Metall auf Metall II	'동등한 재현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평균적인 장비와 능력을 갖춘 음악제작자가 동일한 음악적 맥락에서 청중이 동등하다고 받아들일 음원을 제작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6. 5. 31. BVerfG, 1 BvR 1585/13	재현 가능한 샘플의 이용을 원음반 제작자의 허락에 의존시키는 것이 예술의 자유에 합치하는가	샘플을 직접 재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락 없는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종전 판결은 예술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BGH 판결들과 2011년 OLG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BGH로 환송하였다.

2017. 6. 1. BGH, I ZR 115/16, Metall auf Metall III	짧은 샘플의 복제가 EU법상 복제권을 침해하는지, 자유이용과 인용 예외가 EU법상 허용되는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 구 제24조의 자유이용, 인용 예외 및 기본권의 관계에 관한 6개 질문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2019. 7. 29. EuGH, C-476/17 Pelham 등	짧은 샘플링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EU법상 제한사유의 관계	짧은 음향이라도 인식 가능한 형태로 이용하면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변경되어 청취 시 인식할 수 없다면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회원국은 지침 제5조에 없는 별도의 예외를 둘 수 없으며, 인용은 차용된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20. 4. 30. BGH, I ZR 115/16, Metall auf Metall IV	2019년 EuGH 판결을 독일법에 어떻게 적용하고 EU법 적용 전후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2002년 12월 22일 이전의 행위에는 예술의 자유를 고려한 구 제24조의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EU법상 인정된 제한사유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OLG Hamburg로 환송하였다.
2022. 4. 28. OLG Hamburg, 5 U 48/05	2002년 이전, 2002-2021년 및 2021년 이후의 각 시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	① 2002년 12월 22일 이전에는 구 제24조의 자유이용을 인정하고, ② 그 이후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는 인식 가능한 샘플링에 대한 권리침해를 인정하였으며, ③ 제51a조 시행 이후에는 Nur mir를 패스티시로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2023. 9. 14. BGH, I ZR 74/22, Metall auf Metall V	패스티시가 예술적 차용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인지, 이용자의 패스티시 의도가 필요한지	패스티시[2]의 개념과 주관적 의도 또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 중 무엇이 필요한지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2026. 4. 14. EuGH, C-590/23, Pelham – 패스티시의 개념	EU법상 패스티시의 개념과 패스티시를 목적으로 한 이용의 판단기준	패스티시는 모든 창작적 이용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존 저작물을 연상시키면서 인식 가능한 차이를 보이고, 그 특징적인 보호요소를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과 인식 가능한 예술적·창작적 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용자의 주관적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2026. 9. 3. BGH, I ZR 74/22, Metall auf Metall VI	EuGH가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Nur mir의 샘플링이 제51a조의 패스티시에 해당하는가	전자음악의 리듬 시퀀스를 힙합이라는 다른 음악 장르로 옮긴 이용은 원곡과 인식 가능한 예술적·창작적 대화를 이룬다고 판단하였다. 제51a조와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주요 법적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Nur mir에서 문제의 리듬 시퀀스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 제한사유의 하나인 독일 저작권법 제51a조 제1문의 '패스티시를 목적으로 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검토되어야 했다.

2) 패스티시(pastiche)란 기존 저작물의 양식이나 특징을 모방·차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내는 기법을 말한다.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 k호는 캐리커처·패러디와 함께 이를 저작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1년 6월 7일 시행된 저작권법 제51a조로 이를 이행하였다. EU법상 패스티시의 구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아래 4)(2) 참조.

첫째, Metall auf Metall에서 추출한 시퀀스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복제권 및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가. 둘째, 문제의 이용이 인용 또는 부수적 저작물 이용이라는 다른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가. 셋째, 패스티시가 광범위한 예술적 차용을 허용하는 포괄적 제한규정인지, 아니면 원저작물과 일정한 예술적·창작적 관계를 요구하는 독자적인 개념인지. 넷째, 패스티시를 인정하기 위해 이용자가 원저작물과 대화하거나 이를 기리고자 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다섯째, 패스티시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5항의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하는지.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법상 모방보호를 통해 다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했다.

4)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보호권리의 침해와 다른 제한사유의 배제

BGH는 우선 문제의 리듬 시퀀스가 약간 변경되었지만 Nur mir에서 청취할 때 여전히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실연자의 복제권에 대한 침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Rn. 17 – 19).[3] 또한 해당 리듬 시퀀스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인식 가능한 형태로 이용한 것은 작곡가의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았다(Rn. 20). 그러나 권리에 대한 개입이 곧바로 최종적인 권리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 제51a조의 패스티시 제한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BGH는 인용과 부수적 저작물 이용의 적용 가능성은 부정하였다. 평균적인 청취자는 해당 음향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타인의 저작물이나 음반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시퀀스는 Metall auf Metall의 특징적인 핵심 부분이고 Nur mir에서도 뚜렷하게 인식되므로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Rn. 21).

(2) 패스티시의 판단기준

독일 저작권법 제51a조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항 k호를 이행한 규정이므로 EU법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BGH는 2026년 4월 14일 CJEU 판결에 따라 패스티시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Rn. 26 – 34).

첫째, 패스티시는 모든 창작적 또는 예술적 차용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보호대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패스티시는 기존 저작물을 연상시키면서도 그 저작물과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는 차이를 보여야 한다.

3) Randnummer (Rn.)는 판결문의 단락번호(영어의 paragraph에 해당).

셋째, 새로운 창작물은 원저작물의 특징적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요소를 이용하여 원저작물과 예술적 또는 창작적 대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스타일의 공개적 모방, 오마주, 유머 또는 비판적 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은폐된 모방이나 표절은 패스티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예술적·창작적 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용자가 패스티시를 만들거나 원저작물과 대화하려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저작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창작물에서 패스티시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Nur mir에 대한 패스티시 기준의 적용

BGH는 함부르크 고등법원(OLG Hamburg)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Nur mir가 위와 같은 패스티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Rn. 35 – 41).

Nur mir의 처음 일곱 마디에서는 Metall auf Metall에서 차용한 시퀀스가 반복된다. 여기에 점차 신시사이저의 선율과 새로운 드럼 리듬이 추가되고, 이어서 독창자의 랩과 배경 보컬, 전기기타 솔로 등이 결합된다. 차용한 시퀀스의 속도는 약 5% 느려지고 박자의 시작점도 이동하여, Nur mir에서는 차용 시퀀스의 첫 박이 Metall auf Metall 제19마디의 셋째 박에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변경은 주의 깊은 청취자에게도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였다(Rn. 36).

따라서 Nur mir 전체에서 Metall auf Metall의 금속성 타격음과 특징적인 리듬은 계속 인식된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선율과 리듬, 랩 및 배경 보컬이 결합되면서 Nur mir는 원곡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음악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전자음악에 속하는 원곡과 달리 Nur mir는 명백히 힙합 장르에 속하는 곡이었다(Rn. 37).

BGH는 특히 원곡의 리듬 시퀀스가 새로운 곡의 도입부로 사용되고, 여기에 다른 음향과 리듬이 점차 추가되면서 전자음악에서 힙합으로 청취자를 이끌어간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원곡을 알고 있는 청취자는 이러한 장르의 전환을 통해 Nur mir가 원곡의 특징적인 리듬을 새로운 음악적 맥락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음악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예술적·창작적 대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Rn. 38 – 40).

피고들이 소송 초기에는 해당 시퀀스를 원곡에서 추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사정도 패스티시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았다. 패스티시는 창작자의 사후 주장이나 소송상 태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BGH는 전자음악의 리듬 시퀀스를 힙합이라는 다른 장르로 이전한 데서 원곡과의 예술적·창작적 대화를 인정하였다(Rn. 41).

특기할 것은, 피고 2가 항소심 구두변론에서는 Metall auf Metall의 '차가운 음향'(Kälte des Klangs), 즉 이 곡을 특징짓는 리듬 시퀀스와 Nur mir에서 예술적으로 대결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소송 초기에는

오히려 해당 시퀀스를 원곡에서 추출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의 변화는 어느 쪽도 패스티시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패스티시는 창작자의 사후 주장이나 소송상 태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BGH는 전자음악의 리듬 시퀀스를 힙합이라는 다른 장르로 이전한 데서 원곡과의 예술적·창작적 대화를 인정하였다(Rn. 38, 41).

(4) 3단계 테스트

패스티시에 해당하는 이용도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5항의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이용은 특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도 안 된다.

BGH는 먼저 제51a조가 패스티시라는 법정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라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Rn. 42 – 44).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상고가 다투지 않은 항소법원의 확정사실을 전제로, Nur mir와 Metall auf Metall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고 두 음반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들의 샘플링은 원곡이 발매된 지 약 20년 후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은 샘플링 라이선스 시장에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샘플링이 원고들의 정상적인 음반 이용이나 수익 획득 가능성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n. 45 – 46).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이 상업적 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단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하였다. 상업적 성격 외에도 차용의 범위, 변형의 정도, 원저작물과의 경쟁 또는 혼동 가능성, 예술적 대화의 존재 및 관련 기본권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곡과의 예술적 대화 및 작품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Rn. 47 – 48).

(5) 부정경쟁법상 모방보호 청구

BGH는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정경쟁법상 모방보호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을 부정경쟁법에 따라 다시 금지한다면 저작권법이 설정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형량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의 복제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모방보호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Rn. 49 – 51).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우선 2026년 CJEU 판결에서 추상적으로 제시된 패스티시의 요건을 실제 음악 샘플링에 적용한 최초의 BGH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JEU는 패스티시가 모든 창작적 이용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은 아니지만, 샘플링 역시 원저작물과 인식 가능한 예술적·창작적 대화를 형성한다면 패스티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BGH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음악의 특징적인 리듬을 힙합이라는 다른 장르로 이전하고 새로운 요소들과 결합하는 방식도 예술적·창작적 대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패스티시의 판단이 창작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작품 자체에 나타난 객관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창작자가 처음부터 오마주나 패스티시를 의도하였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창작자가 단순한 차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원저작물을 아는 청취자가 두 작품 사이의 예술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패스티시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창작 당시의 내심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준이다.

셋째, 모든 샘플링이 패스티시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차용된 요소가 원저작물의 특징적인 요소이어야 하고, 새로운 창작물은 원저작물을 연상시키면서도 인식 가능한 차이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원저작물과의 예술적·창작적 대화가 작품 자체에서 드러나야 한다. 단순히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한 음원의 복제, 은폐된 모방, 표절 또는 원저작물을 대체하거나 그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 이용은 패스티시로 인정되기 어렵다.

넷째, 이 판결은 음악산업과 샘플링 창작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식 가능한 샘플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곡의 특징적인 요소를 새로운 장르와 표현형식으로 전환하고, 원곡과 인식 가능한 창작적 관계를 형성하며, 원곡의 정상적인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제51a조에 따라 허락 없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패스티시 해당 여부는 작품 사이의 거리, 차용 부분의 기능, 청취자의 인식, 시장의 경쟁관계 및 라이선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일반적인 '샘플링의 자유'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샘플의 이용범위가 크거나 새 작품이 원곡과 경쟁하는 경우, 원곡과의 창작적 대화가 외부에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전 라이선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20년 넘는 동안 분쟁의 쟁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초기 판결들은 샘플의 길이와 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여기에 예술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저작권법의 통일적인 복제권과 제한사유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후 독일 입법자가 제51a조에 패스티시 제한규정을 도입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의 중심은 '복제가 있었는가'에서 '그 복제가 원저작물과 어떠한 예술적·창작적 대화를 형성하는가'로 이동하였다.

BGH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21년 6월 7일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Nur mir의 샘플링을 적법한 패스티시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이 결론은 제51a조 시행 이후의 청구에 관한 것이다.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2002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의 이용행위에 대해 인정한 침해책임은 이번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BGH, Urteil vom 3. 9. 2026, I ZR 74/22, Metall auf Metall VI (https://www.bundesgerichtshof.de/SharedDocs/Entscheidungen/DE/Zivilsenate/I_ZS/2022/I_ZR__74-22A.pdf?__blob=publicationFile&v=4)
- BGH entscheidet zum sechsten Mal, in: Legal Tribune Online, 03.09.2026, https://www.lto.de/persistent/a_id/60793 (방문 : 21.09.2026)
- Pelhams Rhythmus-Klau war gar keiner. beck-aktuell, 03.09.2026 (방문 : 21.09.2026 von https://www.beck-aktuell.de/node/205106)
- 박희영, 유럽사법재판소, 음악샘플링은 패스티시(pastiche)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 이슈리포트 2026. 6.